
테 마 진 단

◆ RAAS식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장이규 선임연구원, 김동겸 연구원

1.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금융시장 개방화,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적, 미래지향적 감독의 일환으로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시장 환경 및 규제수준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감독당국의 다양한 목적 하에서 폭넓은 기법이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
 - 전통적인 감독방식은 과거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법규준수 및 실제 영업성과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이러한 전통적 감독 방식에서는 각 회사의 취약한 리스크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모든 리스크 영역을 포괄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는 전통적 감독 방식과는 달리 목표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각 리스크 분야에 대한 평가 후 검사 범위를 결정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음.
-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개방화,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미래지향적 감독이 필요하게 됨.
 - 구조화된 과정(structured process)을 통해 각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개별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수준이 낮은 사업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사후평가 및 사후교정 위주의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제도(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를 2007년 4월부터 시행함.

-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분기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결과를 통해 리스크가 큰 회사 및 사업부문에 감독 자원을 집중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서는 리스크 평가제도의 특징, 선진 금융 감독당국의 리스크 평가제도의 비교 등을 통해 향후 보험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의 제반 특징 및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사례를 살펴 보고,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중인 SolvencyⅡ가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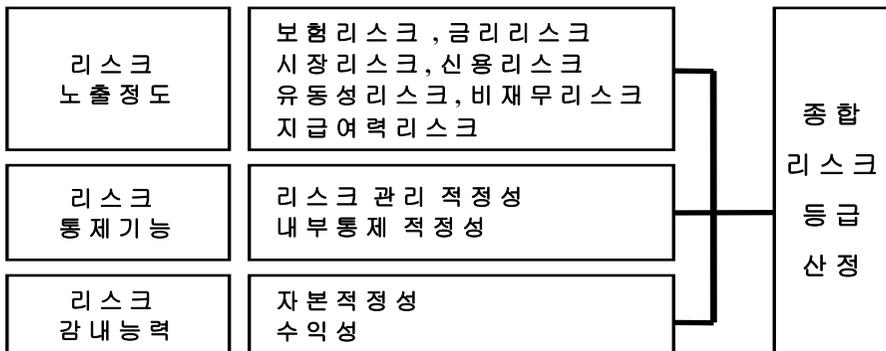
구분	현행제도	개선방안	Solvency Ⅱ의 체계 (3pillar)
자기자본규제	EU 식 지급여력제도	⇒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 양적규제 : 최저자기자본 규제
건전성 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	⇒ 리스크 평가제도	■ 질적 규제 : 리스크 감독 규제
공시제도	경영공시	⇒ 리스크 공시	■ 시장규율 강화 : 자율 공시

2.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의 특징

2007년 4월 도입 예정인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RAAS)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따른 리스크 노출정도, 리스크 통제기능, 리스크 감내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현행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주된 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재무실적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리스크 평가제도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그 결과를 감독업무에 활용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을 가능토록 하는 일련의 과정임.

<그림 2> RAAS 평가요소 및 활용



- 리스크 평가제도(RAAS) 하에서는 리스크 노출정도(Risk Exposure), 리스크 통제기능(Risk Control), 리스크 감내 능력(Risk Tolerance) 등 3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산출된 종합리스크 등급을 고려하여 감시수위를 결정하며, 이를 감독업무에 활용함.

- RAAS에서는 리스크 노출정도 항목에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자산 부문도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구분하여 평가함.
 - 또한, 평가 시점의 재무성과 외에 과거 경험을 등을 이용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지표를 추가하여 미래의 손실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됨.
- 리스크 노출 정도는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상품구조, 자산운용방식 등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생보 22개 손보 24개의 계량지표로 구성됨.
- 리스크 노출 정도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비재무리스크 등 6개 부문으로 나눈 후 개별 평가 지표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게 됨.
 - 리스크 노출정도의 평가지표는 BIS 표준방법, NAIC의 IRIS 지표, 현행 경영실태 평가(CAMEL)의 계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하고 있음.
 - 각 평가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기초지표(개략적인 리스크 측정치), 정밀지표(리스크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리스크 지표), 보조지표 그룹(리스크 노출정도와 관련된 비율지표)으로 분류됨.
- 매분기별로 개별 평가지표에 부여된 등급에 따라 리스크 부문별 평가등급이 산정되며, 각 리스크별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금액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리스크 노출정도를 5등급 체계로 산정하게 됨.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비재무리스크의 관련금액은 각각 수입보험료(생보)·보유보험료(손보), 책임준비금, 시장리스크 노출자산, (총자산-단기매매증권), 총자산의 15%, 총자산의 15% 임.
- 리스크 통제기능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8개 항목, 내부통제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리스크 통제기능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2개 부문에 대한 비계량평가로 이루어지며, 항목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임점검사를 통해 이루어짐.
- 리스크 감내능력은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된 경우 이를 감내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3개 항목, 수익성 5개 계량지표 항목으로 구성됨.

- 리스크 감내능력에서는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 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본적정성 부문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익성 부문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짐.

3.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제도

선진 주요국의 금융 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의 사전 예방적 상시 감독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취약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선진 주요 금융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변동에 대한 상시 감시, 사전 예방조치 등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 감독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포괄하는 상시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 임점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리스크 평가시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비중있게 고려함으로써 리스크 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의 성격을 가짐.
 -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 조치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조치, 감독기관과 금융기관간의 경영개선 협의서 체결, 감독기관의 강제적 조치의 단계를 거치게 됨.
- 이와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의 운영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별 회사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짐.
 - 또한, 리스크가 취약한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독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며, 리스크의 조기발견 및 관리, 통제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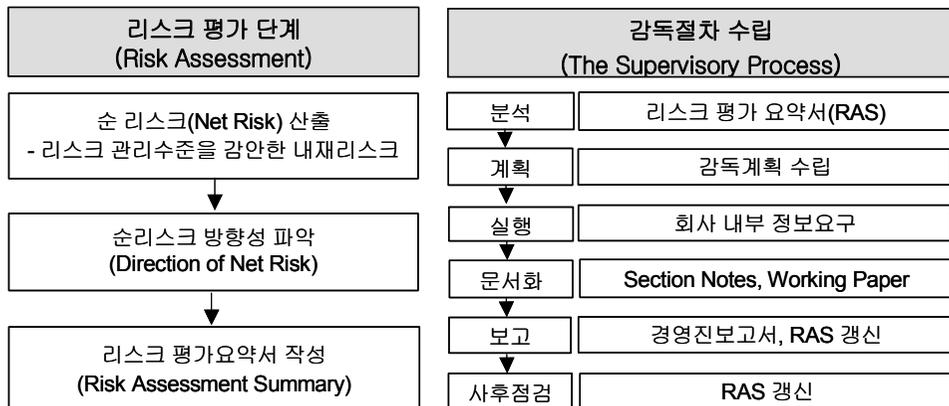
<표 1>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현황

구분	명 칭	적용시기	적용 대상
캐나다(OSFI)	Supervisory Framework	1999	보험·은행
호주(APRA)	PAIRS (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2002	보험·은행
영국(FSA)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2003	보험·은행·증권
미국(NAIC)	The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	2004	보험

가. 캐나다

- 캐나다의 통합 금융감독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Supervisory Framework를 실시 중에 있음.
- OSFI에서는 고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과정의 분리 평가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보다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 3> Supervisory Framework 의 구조



- OSFI에서는 전략적 사업계획, 자본할당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각 개별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활동(Significant Activities)을 산정하고 있음.
 - 주요 업무활동 산정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개별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 리스크 가중 자산, 수익, 세전 수입, 리스크 가중 자본, 준비금 등이 있음.
- 고유리스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리스크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및 수익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 및 발생확률을 통해 산출되고 있음.
 - OSFI에서는 고유리스크를 크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이자율리스크, 환리스크), 보험리스크(상품설계 및 가격리스크, 언더라이팅 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 리스크, 전략 리스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개별 회사의 주요업무활동에 따라 고유리스크를 산출한 후 low, moderate, high의 3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리스크관리 수준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순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됨.
-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한 재무분석, 규제준수,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에서는 개별회사의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해 strong, acceptable, weak 등급을 산정하여, 고유리스크 등급과의 조합을 통해 순리스크 등급을 low, moderate, high로 산출하게 됨.
- 감독당국은 개별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고유리스크, 리스크 관리수준, 순리스크, 순리스크의 방향성 등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토대로 리스크 평가 요약서(Risk Assessment Summary)를 작성하게 됨.
 - 리스크 평가 요약서 상에는 주력사업전략에 대한 정보, 리스크 관리 통제 능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 과거 12개월 동안의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감독당국의 감독 과정에 이용됨.
- 리스크 평가단계를 거친 후, 감독당국의 감독절차수립 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단계에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 요약서를 토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계획 및 조치가 실행됨.
 - 즉, 리스크 평가단계에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 요약서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

관에 대한 감독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 임점검사 및 지속적인 감독 등의 조치가 취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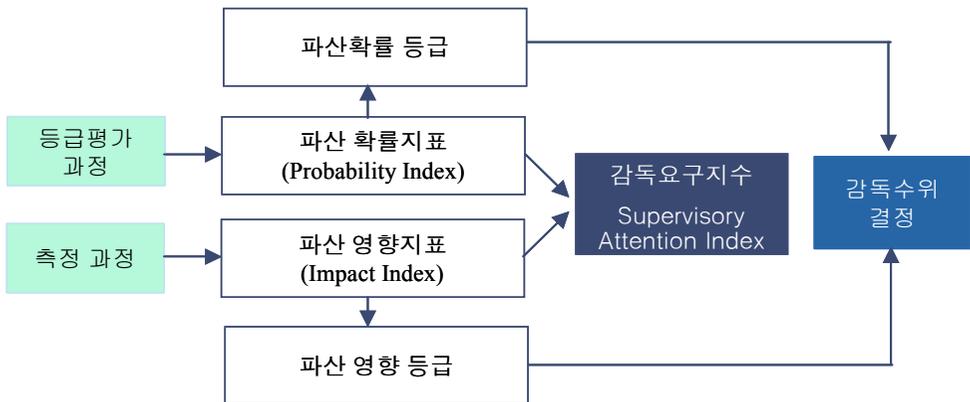
- 이를 통해 초기에 작성된 리스크 평가요약서가 다시 갱신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됨.

나. 호주

- 호주의 금융감독당국인 APRA에서는 2002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 확률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을 개발함.
 - PAIRS 시스템은 통계 분석과 감독적인 판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수탁자에게 재정적인 보장을 할 수 없는 확률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감독수위를 결정하게 됨.
-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는 개별회사의 고유리스크,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의 자금지원(capital support)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됨.
 -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의 사업 부문의 특성 및 규모로 인해 향후 재무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고유리스크에 대한 평가임.
 - APRA의 고유리스크 평가항목으로는 부도 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리스크, 전략리스크, 전염리스크 등이 있음.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을 평가하는 부문에서는 개별회사의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 시스템, 정책 및 고유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회사의 통제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사회, 임원진, 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자금지원능력은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 및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회사의 잉여금, 수익, 추가적인 자본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Low, Low Medium, High Medium, High, 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됨.
-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의 파산확률 등급(Probability Rating)과 영향등급(Impact Rating)에 기반을 두게 되며, 감독조치는 4단계인 Normal, Oversight, Mandated Improvement, Restructure로 구분됨.

<그림 4> PAIRS 모형의 구조



자료 : <http://www.apra.gov.au/>

다. 영국

- 영국의 통합 금융당국인 FSA에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둔 규제를 운영하기 위해 2003년 2월 ARROW 시스템을 발표하였음.
- ARROW 리스크모형에서는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인 개연성(probability)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 손해액인 영향력(impact)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리스크로 인식함.

- ARROW 모형은 FSA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감독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주요 리스크의 확인, 리스크의 중요도 측정, 리스크의 경감, 리스크관리 과정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실행하고 있음.

<그림 5> ARROW RISK 평가모형 개요



자료 : The FSA's risk-assessment framework, 2006

- ARROW 구조 내에서의 등급 점수는 영향력(impact)과 개연성(probability)이 각각 low, medium low, medium high, high로 대응되는 4단계 등급으로 구성됨.
 -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FSA의 설립목적에 부정적으로 미치게 될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하게 됨.
 - 이를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한 범위 및 심도에 대한 양적인 정보 및 소비자들의 변동성, 향후 예측되는 손실의 특성 등 질적인 요소도 고려하게 됨.
 - 또한, 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 검사를 "Full Arrow", "Arrow Light" 및 "The Small Firms Model"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수행함.
- 개연성은 특정사건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개연성에 대한 평가시 특정 상품, 사업부문에 내재되어있는 총 리스크를 고려하게 됨.
 - 사업리스크(Business risk)와 통제리스크(control risk)로 구분하여 개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10개의 리스크 그룹(risk group), 52개의 리스크 요소(risk element)로 구분됨.
 - 이들 개별 리스크 요소가 개별 금융기관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개연성 등급이 산정됨.
- FSA의 감독의 초점은 개별회사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맞추어져 있으며, 또한 개

별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과정을 고안해 내도록 하는데 있음.

- 우선, 계획(Planning)단계에서는 리스크 수준에 대한 초기 추정치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후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가 이루어지는 조사(Discovery)단계를 거치게 됨.
-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임점검사를 통해 검토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경영진과의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보고서가 작성됨.

라. 미국

- NAIC에서는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를 2004년부터 시행 중임.
-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는 크게 리스크 중심 검사(Risk-Focused Examination), 서면상의 리스크 중심 재무분석(Off-Site Risk-Focused Financial Analysis), 내부 및 외부변화(Internal/External Changes), 우선순위시스템(Priority System: CARMEL), 감독계획(Supervisory Plan) 등의 5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면상의 리스크 중심 재무분석은 잔여리스크(residual risk)를 사용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의 선정, CARMEL 등급의 결정, 감독계획을 수정하는데 이용되며, 각 회사별 핵심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부여함.
 - 내부 및 외부변화에서는 임점검사를 통해 회사 등급평가의 변화, 소유구조, 기업 전략, 법적 규제상태 등을 파악하게 됨.
 - 우선순위 시스템인 CARMEL 제도는 FAST 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확보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부문을 확인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재보험, 준비금, 경영, 수익 및 유동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게 됨.
 - 또한, 우선순위 시스템의 결과는 보험회사 운영에 관한 취약부문의 선정, 향후 12~18개월 동안의 감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데 이용됨.
- 리스크 중심 감독 구조에서의 각 부문의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

CARMEL 등급, 감독계획, 외부정보, 핵심 재무 데이터 등이 포함된 개별 보험 회사의 평가 보고서(Insurance Profile Summary)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개별회사에 대한 검사에 이용함.

□ 리스크 중심 검사는 감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리스크가 취약한 부문의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됨.

○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 파악 → 핵심사업의 고유리스크 확인 및 평가 → 리스크 관리과정 평가 → 잔여 리스크(residual risk) 결정 → 검사과정 수립 및 시행 → CARMEL 등급 수정 → 검사보고서 작성

- 1단계에서는 회사 개요, 소유구조,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평가, 감사기능의 적정성,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을 파악함.

- 2단계에서는 각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 리스크 통제를 거치기 이전의 리스크인 고유리스크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3등급으로 평가(low, moderate, high)를 함¹⁾.

- 3단계인 리스크 관리과정 평가에서는 앞서 확인된 고유리스크를 리스크 경감전략(risk mitigation strategy)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strong", "moderate", "weak" 3등급으로 구분됨.

- 4단계에서는 2단계와 3단계에서 평가한 고유리스크와 회사 내부통제능력을 바탕으로 잔여리스크(residual risk)를 계산하며, 여기에 감독관의 재량이 가미된 Overall Residual Risk를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최종적인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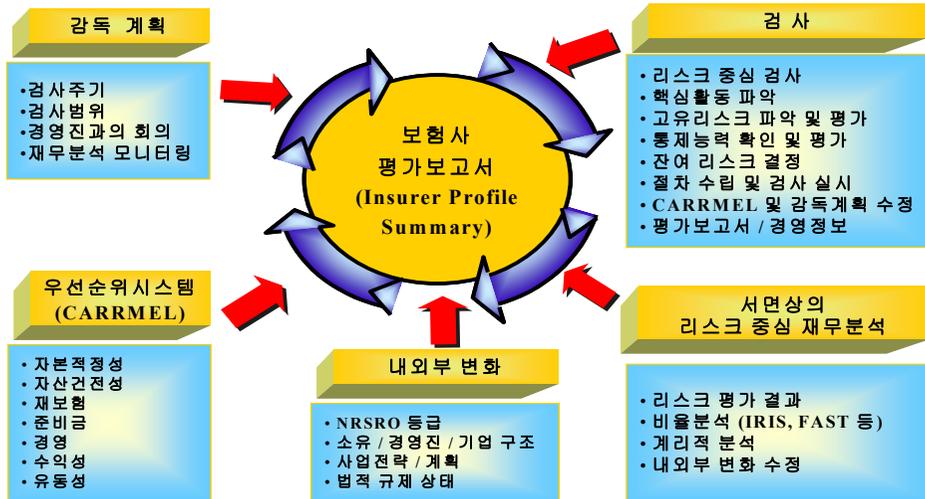
- 5단계에서는 앞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서를 바탕으로 검사의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검사과정이 수립 및 시행됨.

- 6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결과 및 검사 활동을 통해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CARMEL 등급의 수정이 이루어지며, 이 후 최종적인 검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Examination Report"와 향후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Management Letter"가 작성됨.

□ 주 감독당국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감독 계획에 대한 개요를 명시하게 됨.

1)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에서는 고유리스크(herent risk)를 신용, 시장, 가격/인더라이팅, 준비금, 유동성, 법규, 전략, 평판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6> NAIC의 리스크 중심 감독구조



자료 : NAIC,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 2004

4. 3 Pillar 체계와 리스크평가제도(RAAS)의 역할

RAAS는 3 Pillar 감독체계에서 "Pillar 2 : 감독당국의 검사"로 진화할 것이며 "Pillar 1 : 지급여력규제"와 함께 리스크중심 감독을 완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요구자본 규모와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될 것임.

□ RAAS는 "Solvency II"의 3 Pillar 감독체계상 "Pillar 2"인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SREP: 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²⁾에 해당하며 보험감독당국 검사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

2) 보험권에 적용중인 영국의 ARROW, 호주의 PAIRS, 캐나다의 New Supervisory Framework 및 미국의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은 모두 "Pillar 2"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검사 프로세스임.

<그림 7> 3 Pillar 체제에서 리스크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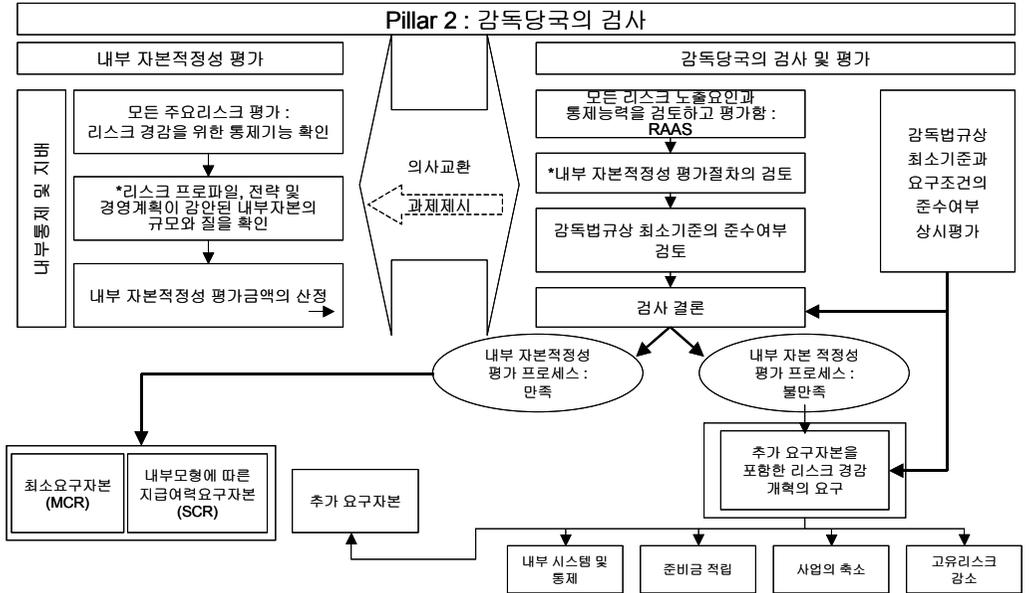
Pillar 1(양적규제) 지급여력관련 규제	Pillar 2(질적규제) 감독당국 검사	Pillar 3 시장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비금 평가 · 요구자본의 이원화 : 최소요구자본(MCR), 지급여력요구자본(SCR) · 투자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 ·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S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감독당국, 시장) · 투명성 확보
요구자본을 리스크에 연동 ← 새로운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의 도입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 ←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내부모형 사용 권장 및 RAAS		
금융서비스 영역간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 감독 및 요구자본 수준의 조화		

자료 : Mercer Oliver Wyman, Solvency II: Strategic Impact on Insurer, May 2006

- 3 Pillar 감독체계 전반적인 관점에서 RAAS를 이해하면, "Pillar 1"에서 다룰 수 없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Pillar 1"과 함께 리스크중심 감독의 완결성을 확보함.
- 유럽의 "Solvency II"에 의하면, 지급여력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을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따라서, 국내의 RAAS 역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임.
- "Solvency II"의 "Pillar 2"는 크게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와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프로세스"로 구분될 수 있으며, 리스크 노출요인과 통제능력을 평가한 RAAS를 통하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은행권의 Basel II에 영향을 받아 EU에서 추진중인 신 보험감독체계로 현재 프레임워크는 완성되었으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 중임.

<그림 8> “Pillar 2”로서 리스크 평가제도의 지향점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 Pillar 2 and Supervisory Review : A New Approach to Regulation?, April 2006

- o 유럽연합의 경우 RAAS를 통하여 지급여력요자본(SCR)을 상회하는 추가자본의 적립(Capital Add-On)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감독당국에 부여하고 있음.
- 즉 현재 국내의 RAAS는 리스크 평가를 통한 감독수위 및 감독분야의 발굴이 가장 큰 목표이나,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자본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큼.
- o 따라서, RAAS는 경영실태평가의 보안 및 대체 제도를 넘어서 "Pillar 2"의 핵심적인 감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추가자본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적기시정조치(즉, 리스크경감 계획 등)와의 연계가 필연적임.

5. 리스크중심 감독의 영향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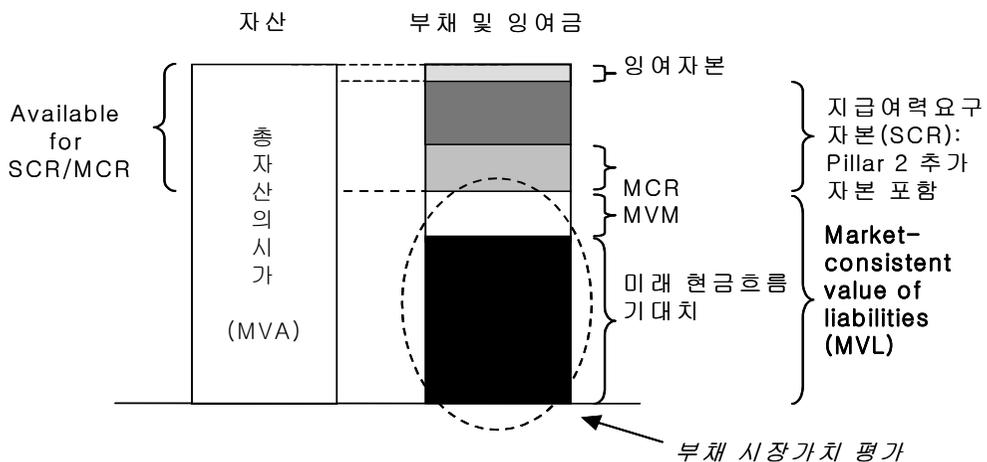
리스크 중심감독은 연금재물보험 등 리스크가 큰 보험종목의 보험료 인상,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선호도 증대 및 부채평가 변화를 주도하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아웃소싱의 활용 등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함

- 3 Pillar에서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RAAS뿐만이 아니라 리스크에 연동되는 요구자본의 산출이 필요하므로 RAAS의 시행은 RBC제도 도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는 리스크통제(Risk Control)능력의 강화를 유발하여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의 출현 및 발전을 가져올 것임.
 - 이 경우 지급여력요구자본(SCR)은 위험계수(Risk Factor)방식이 아닌 시나리오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언더라이팅 리스크 노출규모에 따른 요구자본 및 감독정책의 수립은 결국 보험료 및 보험상품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이 큰 재물보험 같은 거대위험에 노출된 손해보험은 더 많은 자본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종목의 분산된(Diversified) 포트폴리오는 전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감효과는 평균지급보험금 대비 독일과 이탈리아는 11%, 영국은 14%를 기록함⁵⁾.
 - 연금처럼 장기에 걸친 보증(Guarantee)이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 리스크 노출기간이 긴 만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의 가치는 현재의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에서는 추가 자본이 요구됨.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RAAS의 시행뿐만이 아니라 조만간 지급여력기준 금액(요구자본)의 산출방식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었음
5) 자세한 내용은 "Swiss Re, Solvency II: An Integrated Risk Approach for European Insurers, No4/2006 Sigma"를 참조

- 시장, 신용 등 투자리스크의 고려는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선호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에 걸친 이자율 보증 조항을 지닌 생명보험(양로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투자리스크 노출규모가 커서 자본비용 상승이 우려됨.
 - 특히 장기간의 헤징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장에 헤징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험회사 대차대조표 항목 중 가장 그 비중이 큰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역시 리스크 중심 감독의 영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프로젝트 "Phase II"의 작업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최선의 추정치에 시장가치마진(MVM)을 추가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중임.
- 부채평가 및 리스크중심 감독이 완성된 경우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의 모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9> 미래 경제적 대차대조표의 특징



자료 : Raj Singh at ABI conference, Solutions to major issues for Solvency II; The industry's priorities for reform, 6 April 2006

-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통제능력의 계량화는 보험회사 모든 분야(예를 들면, 자산관리, 계약관리, 상품개발, 클레임 처리 등)의 비용을 투명하게 나타내므로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문화 및 아웃소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분화는 “상품 제공자” 혹은 “상품 판매자”로서 양분화 될 개연성이 존재함.
 - 즉, 리스크 관리에는 강점을 갖고 있으나 판매조직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상품설계 및 위험 전가에 업무를 집중하며 판매채널은 아웃소싱 필요
 - 강력한 판매채널을 확보한 보험회사는 판매 영역에의 특화를 더욱 강화시키며 상품설계와 위험전가전략은 다른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자 이용 필요
- 또한, 리스크 평가를 회사 단위별로 하는 경우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대형 그룹사의 경우 분산효과를 향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를 브랜치화하는 경향도 예상할 수 있음.
 - 특화된 보험종목, 지역 그리고 단순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소형보험회사의 경우 분산효과는 적으나, 지급여력 계산, 내부 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음.
-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전 영역에 걸쳐 risk return에 대한 고려가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즉, 보험료 및 준비금 평가 시 보증 및 옵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전통적 계리방법론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6.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단기적으로는 RAAS의 도입에 만전을 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상품설계의 변화 및 리스크 경감 전략을 통한 자본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전사적위험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리스크중심감독과 경제적가치의 증대를 조화롭게 일치시킴.

- 리스크평가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로 국내 보험검사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 모두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표 2>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대책

보험회사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 수립
 1. 리스크관리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활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2. 사업에 부수되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정책 수립
 3. 리스크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사회 부여
 4.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경영정보 확보 긴요
 5. 리스크 측정과 관리에 관한 문서화

- 임점(on-site visit)검사 이전의 준비사항
 1. 감독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2. 감독당국의 출판물 혹은 여타 다른 출처로부터 집중 검사대상에 대한 단서를 확보
 3. 취약부분이 있다면 개선에 대한 실행계획도 확보
 4. 주요 문서에 대한 준비 철저
 5. 리스크와 관련하여 토론할 준비를 철저히 함

- 임점(on-site visit)검사 이후의 준비사항
 1. 검사시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2.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할 준비
 3.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실행계획상 우선순위 설정

보험감독당국

- 리스크 평가시 보험회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검사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ARROW II"의 시행을 통하여 "검사마감 회의" 및 "검사결과보고서 초안"의 제시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을 수정함

- 교육과 효율적인 IT 확보를 통하여 검사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리스크(규모 및 확률)에 따른 감독수준의 유연성 확보, 즉 임점검사주기의 차별화 및 소형사의 자원(Resource)수준에 맞는 리스크 통제능력 평가 등

주 : 영국의 ARROW 모형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대응사례 참조

- 보험상품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유계약의 경우 신계약 인수 중단(Run-off), 혹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판매 등의 검토가 요구됨.
- o 또한 자본집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품설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익배분협정과 옵션 및 장기보증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보험계약자도 손해의 일부를 감내하는 손실참여체계(Loss Participation Scheme)의 도입
 - 보험료 및 보험금의 조정을 허용하는 계약 조항의 도입, 예를 들면 보험료의 물가상승률 연동화 혹은 연금전환율의 주기적인 조정 등
 - 다양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복합상품 개발을 통하여 자연적 헤지(Natural Hedge)를 유도
- 즉, 보증 및 옵션 제공의 축소와 보험계약자와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RAAS와 새로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체계는 주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는 대신 리스크 헤징 및 리스크 전가 등의 리스크 경감효과의 인정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므로 재보험, 헤징상품 및 증권화(Securitisation) 전략의 적극 추진이 필요함.
- 재보험자는 더 나은 리스크 분산효과를 향유하므로 리스크 전가를 위한 출재비용이 리스크 보유에 따른 자본비용보다 적을 수가 있음.
- 내부모형을 통한 지급여력요구자본(SCR) 산출이 인정될 경우 보다 적은 보험료로 지급보험금의 꼬리부분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비례재보험(Excess of Loss)의 활성화가 필요함.
 - 결국 재보험의 사용여부는 재보험회사업자의 요구자본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출재비용의 수준에 좌우됨.
-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ALM관리를 통한 복제(Replicating)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최선의 방법이나 만기와 유동성을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통한 헤징이 고려될 필요성 존재
- 투자리스크에 대한 자본비용 혹은 헤징비용은 생명보험계약의 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므로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특히 투자리스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보험상품의 공급 확대가 예상됨.
- CAT 본드 같은 보험연계증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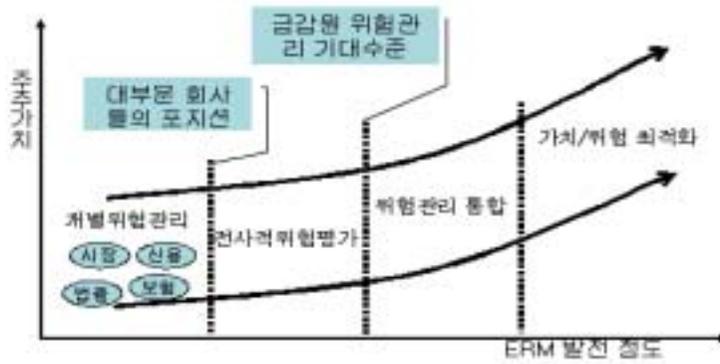
- 투자전략의 차이는 보험회사의 경제적 가치에 중립적이므로, 즉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추가 자본비용이 동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언더라이팅 마진, 성장률 및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주주가치 극대화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새로운 보험료 설정방법,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및 내부모형을 통한 지급여력요구자본 금액의 산출 등 향후 보험회사의 공표 이익 및 잉여금은 리스크 평가방법 및 수준에 달려있으므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사 경험실적의 집적 및 분석방법의 선진화가 요구됨.
 - 또한, 통계부족으로 인한 편이(Bias)의 제거 혹은 신빙성 있는 추세의 반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산업 통계가 필요함.
 - 책임준비금 및 내부모형을 통한 요구자본 평가방법 - 즉, 리스크 계량화 - 의 적정성 검토가 RAAS를 통한 “Pillar 2”의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므로 객관성과 일관성 있는 평가방법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에서 보험회사의 생존과 발전은 자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임.
 - EWRM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자신의 경제적 자본요구량을 산출하며, 리스크 통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므로 EWRM을 활용 Pillar I 과 II 모두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형내재가치(EEV) 및 RAROC과 같은 성과지표의 활용을 병행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리스크관리를 전사적 차원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6) “유럽 보험 및 직역연금감독관 협의회(CEIOPS)”는 국제계리인회의 제안을 참고로 보험부채의 경우는 보험 잔여기간까지 손실분포의 75%, 지급여력요구자본의 경우 1년간 손실분포의 99.5%를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리스크 측정치(Risk Measure)는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VaR보다는 TVaR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그림 10> EWRM의 발전과정



자료 : 보험개발원, 「세계 보험회사들의 전사적 위험관리 추진현황과 시사점」, 주간보험이슈 제63호, 2004년 11월